

법 률 자 문 현 황

구분	자문내용	비고
시교육청	모바일 앱 민원 관련	
	임대차계약 체결 및 연체임차료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압류대상 제외 노임채권 관련	
소계	4건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사 임용절차 관련	
	교육감 토지 위 무허가 건축물	
	상고여부의견요청	
	사실조회에 따른 법률 자문	
	행정기관명칭 저작권	
	학교폭력사안처리	
	교육부 특정감사 관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효력	
소계	8건	
초등학교	운동부 학생 질병 발생 관련	
	정보공개 청구 건	
	사실조회서 회보 관련	
	수급인의 대가지급 청구 관련	
	저작권법 위반여부	
	공유재산 허가기간 만료	

	정보공개 청구 건	
소계	7건	
중학교	사실확인서 작성요청 관련	
	교복대금 지급	
	채권압류 관련	
	급식물품 업체 참가기준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소계	5건	
고등학교 및 기타학교	통학버스 입찰관련	
	공사계약 관련 자문	
	기금 처리관련	
소계	3건	
총계	27건	

※ 동일한 자문내용에 대해 2명 이상의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 받은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함

법률 자문 결과 보고서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1	모바일 가정통신문 앱 민원에 대한 법률자문 검토	<input type="checkbox"/> 우리 교육청의 모바일 가정통신문 앱 MOU 체결상 절차의 문제가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타유료 모바일 가정통신문 업체들의 주장처럼 간접적인 불이익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 양해각서의 체결에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없다고 사료
		"	☞ 절차상 문제 없음 ☞ 타업체들이 그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 절차상 문제 없음 ☞ 법적 책임 없음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2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및 연체 임차료 관련	<input type="checkbox"/>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소유자로 등기는 되어 있었으나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최초 계약 및 재계약시 합동계약서 형태 1건으로 작성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상 기명날인은 각각 된 것이며, 임대료 납부문제 등 모든 행위가 임대인과 교육청 간에 각각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동산 공유자들의 임대인들로서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불가분채무인지 분할채무인지, 불가분채무 판결 판례가 있는지?	<p>☞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2인이 공동임대인이 되어 교육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임대인들의 내부사정은 고려되지 않음.</p> <p>☞ 임대인의 주장대로 최초계약 및 재계약시 합동계약서 형태 1건으로 작성되었으나 각각 기명날인 되었다고 해도, 임대인의 의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p> <p>☞ 임대인의 내부사정에 관한 판례는 없지만 그러한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법의 원칙임.</p>
		”	<p>☞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부터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대법원 98다43137 판결)</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부터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대법원 98다43137 판결)
3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관련	<input type="checkbox"/> 관할청의 처분허가 없이 이전사업 추진한 학교법인 이사장 고발 여부 <input type="checkbox"/> 관할청의 매도 및 담보제공 허가 시기 <input type="checkbox"/> 기본재산 교환 및 무상양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사실만으로 형사상 고발은 적절치 않음 ☞ 매매, 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담보권설정 등기 전이라면 사후허가도 가능 ☞ 교환 목적물이 반드시 등가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학교법인과 재산 교환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사실만으로 형사상 고발은 적절치 않음 ☞ 무효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 법률에 따로 교환과 무상양여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관할청의 허가만 있으면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유효하게 되므로 고발할 사안은 아님 ☞ 관련 사실만으로는 사후허가가 가능 ☞ 학교법인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고, 새로 취득하려는 재산의 가치가 더 크므로 교환 가능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3	학교법인 OO학원 기본재산 처분 관련	□ 관할청의 처분허가 없이 이전사업 추진한 학교법인 이사장 고발 여부	☞ 학교위치변경(이전) 계획이 승인된 이후 관할청의 사전 처분허가 없이 매매 당사자들이 기존 학교부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학교 이전 추진이 명 백하고, 이전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사립학교 법 제28조 위반으로 형사고발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	☞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새로 취득 할 재산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법조항 위반으로 처 별을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음. 또한, 매매계약 성립 후 에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현 상태에서 법률조항을 완전히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고발은 적합 하지 않음
		"	☞ 관할청의 처분허가를 요하는 것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매매 등 계약 성립후에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유효하게 되므로 고발할 사안이 아님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4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채권과 관련한 자문	<input type="checkbox"/>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채권에 대해서 기성금 지급 후 공사대금 압류결정문이 접수된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총산출내역서상 노무비로 산정해야 하는지 <input type="checkbox"/> 기성금으로 지급된 공사대금 중 산출내역서상 노무비를 공제하고 산정해야 하는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산합의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
5	기간제교사 임용절차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인천시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교감 2명이 채용심사위원회를 내부결재 없이 구성하였고, 그 중 1명은 면접일 당일에 해당학교 교감이 아닌 교감 발령예정자인 경우, 기간제교사 임용절차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침은 법령이 아니라 인천시교육청의 내부에서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사유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더욱이 채용심사위원회는 임용예정인원 2배수를 학교장에게 추천할 뿐 최종의사결정은 학교장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채용심사위원회 구성을 지침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간제교사 임용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6	교육감 토지 위 무허가 건축물 승계 관련	<input type="checkbox"/> 교육감 토지 위 무허가 건축물에 사용허가 받아 거주중인 모 김00의 사망으로 아들 김00에게 미납 대부료 및 대부계약 승계 가능 여부 1. 동거중인 아들이 미납 대부료 및 대부계약 승계 여부 및 승계 받을 시 입증서류 2. 입증 서류 구비 못할 시(건축물 상속 미입증 등) 미납 대부료 소멸 여부 3. 미납 대부료 소멸 후, 아들 김00이 무허가 건축물을 관할 구청에 신고 후 대부 계약 체결 가능 여부	☞ 대부료 채무 및 대부계약은 당연히 아들이 상속하여 이미 승계하였음. 다만 대부계약은 아들과 다시 체결 ☞ 미납대부료는 상속의 입증과 관계없이 상속인이 상속하였고, 상속 입증서류를 구비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이 없어지는 건 아님 ☞ 미납대부료 채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무허가 건축물을 관할 구청에 신고 후 대부계약 체결하는 것은 가능함
		”	☞ 아들 김00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 받음으로서 그가 모 김00의 점유를 승계하였다는 사실 및 아들 김00이 모 김00의 상속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함
7	상고여부의견요청에 대한 법률자문	<input type="checkbox"/>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운영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패소후 대법원 상고 여부	☞ 학원의 교습과정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인 경우에는 학원설립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오로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수공이 가므로 귀청으로서 위 판결을 수용함이 상당하고 항고 실익이 없다고 사료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p>☞ 국제표준무도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 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소 이익이 없다는 의견임.</p>
		”	<p>☞ 체육시설법 시행령의 무도학원업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분명히 명시해 놓았으므로 원고가 신청한 학원은 바로 이 무도학원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학원시설법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신청한 무도학원은 오로지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함.</p> <p>☞ 제1심이 그 판시이유로 실시한 것들은 그러한 사정에 참작하여 위 각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한 사유이지 법원이 이를 이유로 법령의 규정을 넘어서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상고하시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음.</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8	사실조회에 따른 법률 자문 요청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사(A)가 피고 전 남편(B)이 OO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요청서를 OO교육청으로 송달함. <input type="checkbox"/>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들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전남편 B)의 동의 없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가 필요하다면 이를 피고(전남편 B)가 거부할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p>☞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들에 대하여 피고(B)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법원의 요청에 따라 요청받은 서류들을 제출한 우리교육지원청에 대해 피고(B)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p>
9	행정기관의 명칭 저작권 관련 법률자문 요청건	<input type="checkbox"/> 행정기관의 명칭을 민요 등의 노래에 개사하여 부르거나 개사해서 부른 영상·음성 파일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할 수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기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면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 <input type="checkbox"/> 만약 임의로 행정기관의 명칭을 넣어 개사해서 부른 영상·음성 파일로 인하여 기관이미지에 타격을 주었을 시 행정처분 등이 가능한지 여부	<p>☞ 행정기관의 명칭에는 저작권 등 권리가 없어 민요 등의 노래에 개사하여 부르거나 개사해서 부른 영상·음성 파일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으며 기관명칭 도용이라는 법리는 없음</p> <p>☞ 민사나 형사 문제이므로 행정처분은 할 수가 없고, 기관 이미지에 타격을 준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포털사에 개인 블로그상의 해당 영상이나 음성파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10	학교폭력사안처리관련 법률자문	<input type="checkbox"/> OO교육지원청 산하 검암중학교에서는 교내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때, 교육청 미보고 및 자치위원회 미개최 등이 은폐 축소를 시도한 경우로 간주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은폐 축소에 해당한다면 징계관련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할지 자문을 구함	<p>☞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1항~제3항을 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고, 위와 같은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그리고 위 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 제2항을 보면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나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또한 위 법률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를 보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해당 규정에 따른 조치와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데, 위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에 따르면 만일 관할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제50조 및 [사립학교법]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OO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해당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였으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이를 통보하고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OO학교 학교폭력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p>☞ 학교에서는 여러 차례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나 피해자 학부모가 절대로 열지 말아달라고 하며 거절하여, 피해자 부모가 거절하면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알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인 바, 첨부된 학교생활지도 요약서, 학교장 사유서 등을 검토해 보면,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축소하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데 대해 고의나 의도가 보이지 않음. 따라서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p>☞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①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④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⑤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⑥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위원장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보고)받은 경우로서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라고 판단되나,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던 점, 피해자의 학부모가 위 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학교측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여왔던 점, 학교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일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왔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암중 학교측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이 폭력사건을 은폐·축소할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됨</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11	교육부 특정감사 결과 처분 이행 관련	<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한 해석 <input type="checkbox"/> 특정감사 결과 사립유치원이 교직원에게 부당 지급한 급여를 회수하여 유치원회계로 세입조치할 것을 처분한 바, 해당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적용 법률은? <input type="checkbox"/> 급여수령자의 거부를 이유로 유치원이 급여 회수를 미 이행할 경우, 교육지원청의 이행강제수단은? <input type="checkbox"/> 시교육청의 재심의 결과 처우개선비 반납처분을 취소하였다가, 추후 시교육청은 재심의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결과’의 취소는 적법한지? 또, 이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처우개선비 반납고지는 적법한지? <input type="checkbox"/> 교육지원청의 유치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반납 고지’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의 “납입의 고지” 및 유아교육법 제30조의 “시정명령”에 해당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대상자가 해당행위를 한 날”로 해석 ☞ 유치원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일반 민사채권이므로, 민법이 적용되어 10년 ☞ 유치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 간접적으로 회수를 하도록 압박하는 외에 특별한 방법 없음 ☞ 권한 없이 한 재심의 결과는 무효이므로, 재심의 결과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며, 이에 따른 반납고지 또한 적법 ☞ 해당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교원이 해당행위를 한 날”로 해석 ☞ 국가재정법 적용 ☞ 이행 촉구 공문에 급여 회수의 내용과 구체적인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됨 ☞ 행정상 강제징수를 통하여 납부를 강제하거나 민사집행 절차를 준용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행정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며, 당초대로 유치원으로 하여금 처우개선비를 반납토록 함이 상당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이 해당행위를 한 날” 로 해석 ☞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거, 10년 적용 ☞ 유아교육법 제30조의 ‘시정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보다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함 ☞ ‘재심의 결과’ 의 취소는 직권취소에 해당하며 적법, 이에 따른 반납고지 또한 적법 ☞ 해당됨
12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의결 효력 및 처분의 위법성	<input type="checkbox"/> 기존 숙박업(여관)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 득한 후 25년간 운영하던 여관으로서, 자진폐업이 이루어진 현재 기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의결 효력의 소멸 여부? <input type="checkbox"/> 25년 전과 학교주변의 다른 사정이 변함이 없음에도 기존 결정과 달리 “금지” 결정할 경우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전 심의·의결 당시의 학교 주변 환경과 현재 시점에서의 환경이 물리적으로는 유사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환경에 대한 유해성의 평가까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 기존 결정과 달리 “부적합” 결정을 한다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숙박업이 폐업된 이상 기존 위원회의 심의의 효력도 소멸됨. ☞ 25년 전과 학교 주변의 사정이 변한 것이 없더라도 기존 위원회와 다른 결정을 할 경우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진폐업을 하였으므로 기존의 정화위원회의 심의 효력은 소멸됨. ☞ 기존 숙박업이 인근 학교의 학습 환경에 유해하다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생긴 것이 아니므로 “신뢰보호 원칙” 에 따라 기존의 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13	운동부 학생 홈스테이로 인한 질병 발생 관련	<input type="checkbox"/> 운동부 학생 홈스테이로 인한 질병 발생 시 학교 책임 유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교 책임 없음
14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한 법률자문 요청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이 요청한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하나 공개를 하면 민원인이 임의적으로 SNS에 악의적인 글을 올려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바, 이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 공개하기 전에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면으로 받고서 공개가 가능한지의 여부, 그리고 공개를 안하고 학교에 직접 와서 열람해서 보도록 하는 것도 가능한지의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정보는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악용하여 본래 목적 외에 부정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정사용이나 누설금지를 약속하는 서면을 받거나 설령 서면이 없더라도 부정사용이나 누설을 할 경우 위법한 행위가 되므로 서면 작성을 거부할 경우 위와 같은 위법 행위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같이 교부하는 정도로 충분
15	사실조회서 회보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원고 ○○이 본교 재직기간 중 해당연도 정보공개 및 비공개 요청 등으로 원고·피고 쌍방이 계속적인 대립 및 요청이 있었던 진정서, 정보공개(비공개) 서류, 이와 관련 본교에서 생산한 문서 등 일체를 회보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채택하여 서류들을 특정해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경우, 이는 정보공개와는 차원이 다른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입증문제이므로 사실조회 요청을 받은 서류들(비공개되었던 것들 포함)을 송부하여야 함.
16	수급인의 대가지급 청구 관련 법률자문	<input type="checkbox"/> 수급인의 대가 지급청구로 갈음할 수 있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E-mail 수신 착오로 당사자간 대가지급에 대한 입장이 상이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8조와 제69조(이하 ‘지계법’ 이라 한다), 수급인의 대가 청구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9조 1항과 같은 법 제16조에 대한 법률자문과 수급인의 정당한 대가 지급청구일의 해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급인의 잘못된 E-mail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이하 ‘계산서’ 라 한다)한 것은 도급인에게 도달하였다 할 수 없고, 0000.0.00.에 비로소 도급인에게 도달된 것이 지계법상 지급기일의 기준일로 삼으면 족할 것이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 기준일로 부터 14일 이내 지연손해금이 없다는 점을 당사자간 합의한 후 청구금액을 도급인에게 지급하면 될 것임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17	저작권법 위반여부	<input type="checkbox"/> 민간참여사업으로 기증된 소프트웨어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학교에서 사용되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귀 교가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것이 아닌 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함
18	공유재산(체육관)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공유재산의 반환	<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체육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고 이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상회복과 반환 등 제반절차 이행을 확약하였으나 아직 구청이 물품을 회수해 가지 않았기에 구청물품을 체육관의 한공간으로 모아 별도 관리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	☞ 공유재산(체육관 일부) 사용허가 계약기간이 0000.0.00.자로 만료되었고, 두 기관 간에 체결된[공유재산 사용허가서] 제 10조에 의하면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구청은 기한 내에 사용허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고 반환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 학교는 해당 공유재산을 방과후교실로 사용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어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며 구청 물품의 경우 대부분 책상, 의자 등 이동이 가능한 물품이면 사진을 찍은 후 안전한 보관장소에 모아 보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임
19	민원에 대한 법률 자문-정보공개 건	<input type="checkbox"/> 상담일지(담임교사, 교장실, 할머니 방문면담) 및 수사 요청일지 공개 여부 <input type="checkbox"/> **여학생 할아버지가 제시한 '117 신고내용 공개 주장' 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요청받은 내용에 대해 모두 공개
		"	☞ 면담일지 공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20	사실확인서 작성 요령과 관련하여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작성 제출을 해야 하는가? <input type="checkbox"/> 폭력사건개요 전문을 보내야 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주소를 알려도 되는가?	☞ 생년월일 제공가능 ☞ 개인정보나 중요한 내용은 제공하지 않아도 됨. ☞ 주소 제공 가능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21	교복대금 지급	<input type="checkbox"/> 교복대금을 청구할 업체가 채권불이행으로 채권 양도가 된 상황이고 또한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대금청구를 할시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지만 재산처분행위는 할 수 있고 현재 채권양도행위에 대해 부인권이 행사되지도 않고 있어 채권양수인에게 지급하는게 타당
22	가압류 관련	<input type="checkbox"/> 가압류 결정 공문이 접수되어, 채권압류 공제를 하였어야 하나, 급여담당자 업무착오로 지난 5개월간 채권압류를 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채권자는 누락된 압류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채권압류금의 적립이 안 될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현재 추심명령이나 지급명령에 대한 판결문은 없는 상태 <input type="checkbox"/>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input type="checkbox"/> 제3자가 적립금을 충당하여 적립완료한 후에, 채무자에게 임의로 월정액을 변제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귀교로서는 지금부터라도 가압류된 급여를 적립하면 되고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가압류 되었음에도 적립하지 않은 사유로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판결 금액을 먼저 지급한 후 판결금과 그동안 적립금과의 차액은 추후 급여에서 공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면 개별적인 추심이 금지되므로 법원의 명령대로 따름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3채무자의 과실이므로, 학교측에서 변제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채무자가 적립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추심이 들어오면 대항하기 어려우니, 변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부분을 채권자가 최대한 늦게 아는 것이 유리하니, 혹시나 채권자쪽에서 연락이 오면 개인회생 부분은 언급하지 않을 것을 권유
23	급식 물품에 대한 품목별 참가기준 해석요청	<input type="checkbox"/> 급식 식자재(수산물) 수의견적 전자입찰개찰과 관련하여 품목별 참가자격기준 중 수산물 자격기준에 대한 문구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소분판매업」을 갖춘 업체일 것으로 되어있는데, 위 참가자격에서 4가지 업종 모두를 갖춘 업체여야 하는지, 아니면 4가지중에 한가지만이라도 갖춘 업체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단 위 품목별 참가자격 문구에 대하여 해석상 ~과, ~and의 의미로 해석되며, 위 4가지 업종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한다는 의견. ☞ 또한 후순위업체 중에 4가지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함.
24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내용 중 삭제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학폭법 시행령 33조 3항 ‘분쟁당사자’ 의 의미 <input type="checkbox"/> 녹취 파일 요구시 대처 방법 <input type="checkbox"/> 삭제한 부분에 대한 표시 방법 <input type="checkbox"/> 자치위 개최 하루 전 통보한 부분에 대한 행정 절차법 저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회의록에 표시하여 송부하겠음 ☞ 피해자에 국한됨 ☞ 민원인에게는 제공하면 안됨 ☞ 시행령 33조에 의해 삭제됨 의 문구를 첫 머리에 쓰고 밑줄로 통일 ☞ 행정절차법은 일반법이므로 학생들 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이나 위원들의 심의 의결부분, 분쟁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 등을 스스로 판단하여 삭제해야함. ☞ 행정심판 중이므로 더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음. ☞ 민원인에게는 제공하면 안됨. 행정심판위의 요구에는 응해도 됨. ☞ 시행령 33조에 의해 삭제됨 의 문구를 첫 머리에 쓰고 밑줄로 통일 ☞ 행정절차법은 일반법이므로 학생들 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명시돼 있는 내용에 따르면 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25	OO학교 통학버스 입찰관련	<input type="checkbox"/> 업체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자격제한을 두었지만,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확인된 사항에서, 1순위 업체는 입찰에는 결격사유가 없으니 계약체결을 해달라는 상황이고, 2순위 업체도 공고문 내용에 ‘수의계약 결격업체는 입찰에 제한’을 둔다고 한 내용으로 1순위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니,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재공고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아직 적격심사를 하고 있고, 낙찰자를 정하지는 않았음). <input type="checkbox"/> 공고문이 우선인지, 법이 우선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고문 또는 법이 우선일 경우 1순위, 2순위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 학교에서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방계약법에서 수의계약 결격업체라도 부정당업체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귀 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수의계약 결격업체에 대해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은 지방계약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1순위 업체의 계약체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라고 보이므로 수의계약 결격업체의 입찰참가제한을 둘 수 없다고 판단됨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귀 교의 공고가 위법하다고 보이므로 기존의 공고를 철회하고 위와 같이 수의계약 결격업체를 입찰결격사유로 하지 말고 재공고를 하여 다시 입찰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아직 적격심사 중이고, 낙찰자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공고가 더 적합한 상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고문은 법률에 맞아야 하므로 법이 우선이라고 보이고, 법을 우선시할 때 2순위 업체에서 이의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재공고를 해서 위법한 것을 바로 잡는다면 2순위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귀 교가 승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2순위 업체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가 적용되는 입찰절차에서 개찰이 실시되어 최저가격 입찰자가 가려졌으나 아직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입찰절차에 관련 법령이 규정이나 입찰공고에 어긋나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입찰시행자는 당해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아직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반드시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입찰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만 한다거나, 누가 보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최저가입찰자가 결정되었음이 분명하여야만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4.8. 자 2009마1결정), 귀교의 입찰공고가 위 시행규칙 제17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귀교로서는 당해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사료됨</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26	공사계약 관련 자문	<input type="checkbox"/>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사동 증.개축 공사를 입찰 후 계약하여 시공하던 중 계약대상자와 보증사의 요구로 “계약의 이행보증”으로 계약방법을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공사는 장기계속 공사인 관계로 차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차시공에서 지연이 발생함. <input type="checkbox"/> 본 공사가 보증이행 공사로 지연배상금 부과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부과를 누구에게 해야되는지?	<p>☞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시공을 위탁받은 A건설의 경우 이 사건 1차공사의 시공사인 B건설의 지체상금을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계약이행 보증방법 변경에 따라 보증시공을 맡은 시공사이므로 지체상금 부과 대상자라 볼 수 없음</p> <p>☞ 또한 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공사이행보증약관에 의하면 위탁시공까지 약27일건 공사가 지체되었으나 이기간 동안은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것이고 보증시공을 위탁받은 B건설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없음.</p>
		”	<p>☞ 공사를 지연시킨 것은 B건설이므로 B건설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부과. A건설은 보증시공사로 공사를 하였을 뿐이므로 지연배상 책임이 없고 건설공제조합도 계약보증약관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지연배상금은 위 조합이 보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보증이행으로 건축시공을 택하였으므로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시공사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시킬 수 없으므로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접수일은 의미 없음</p> <p>☞ B건설에 대해 실제 지연되기 시작한 때부터 공사 도급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할 수 있음</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27	기금 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	<input type="checkbox"/> 학교 예산(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출금해서 개인 통장으로 관리 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당시 기금 납부자 또는 내용을 알고 있는 일부 인원으로 구성된 구성체가 기금의 대표성을 가지고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신문 등 매체를 통한 홍보, 반환, 집행, 공탁 등) <input type="checkbox"/> 당시 기금 납부자 또는 내용을 알고 있는 일부 인원으로 구성된 구성체가 협의를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협의가 되는 경우 본교 졸업아동의 돌봄거주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이 기금 활용 방안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교 공금이 아니므로 출금해서 개인통장으로 관리 할 수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부금을 출연한 자들을 최대한 추적하여 기금납부자 또는 내용을 알고 있는 일부 인원(기금 납부자가 주축이 되어야 함)으로 OO위원회(가칭) 같은 것을 만들어 그 회 이름으로 기부금 관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부금 모집 당시의 기부목적과 유사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다만, 귀교 졸업 아동의 돌봄 거주시설 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귀교 졸업 아동의 거주시설은 아니더라도 취업 등 자립을 돕거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정도는 유사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음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금해서 OO 모금회의 대표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함 ☞ OO 모금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구성은 먼저 당시 기금 납부자 또는 내용을 알고 있는 일부 인원으로 구성하고, 여기에 가능하면 공익적 관점에서 종교인과 법조인, 대학교수, 공무원 등에서 두세명을 보완하여 공익적 관리주체를 만들어 기금의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음 ☞ 공익적 관리주체를 만들면, 위 공익적 관리주체에서 협의를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협의가 되는 경우 본교 졸업 아동의 돌봄거주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함 ☞ 위와 같은 공익적 관리주체가 가능한지 먼저 고려하고, 위 기금의 사용 용도와 관련해서는 애초에 기금 조성의 목적인 졸업 아동의 돌봄거주시설마련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임